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26호서식] <개정 2023. 12. 14.>

수입·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폐사·질병 신고서(신고확인증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 3일

신고인	상호(성명)	연락처
	사육장소	

	학명	수량	부속서	폐사·질병사유	처리계획
생물정보					

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폐사·질병 상황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유역환경청장 (지방환경청장) 귀하

신고인 제출 서류	1. 수의사 진단서(질병으로 사육할 수 없게 된 경우만 해당하며, 개인이 애완용으로 사육하는 앵무새의 경우는 제외합니다) 1부 2. 사진, 영상 등 폐사·질병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3. 수입허가증 등 죽거나 질병에 걸린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입수경위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	수수료 없음

제 호

수입·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폐사·질병 신고확인증

위와 같이 신고하였음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유역환경청장(지방환경청장) [인]

귀하

처리절차

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 https://wims.me.go.kr	→	사용자 등록	→	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: 정보 입력 및 민원 신청 → 현장(필요시) 및 서류 확인, 보완 요청 → 신고확인증 발급	→	신고확인증 인쇄
홈페이지 접속		신고인		신고인 / 유역·지방환경청(자연환경과)		신고인

210mm×297mm(백상지 80g/㎡, 재활용품)